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
-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 여신개시일로부터 기준금리 변동주기 단위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1개월 이상 ISDA Compounded RFR 사용 대출의 경우)
-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약정기간 이내에서 1회의 회전기간 및 개별여신의 여신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제 1 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 AAA등급 금융채의 기간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 금리를 의미하며,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BSBY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TERM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T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Compounded RFR,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등 각국의 공인기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가.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 나.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 라. BSBY 1개월물, BSBY 3개월물, BSBY 6개월물은 Bloomberg가 고시하는 미국 달러의 기간물 금리
 - 마. TERM SOFR 1개월물, TERM SOFR 3개월물, TERM SOFR 6개월물은 미국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는 미국 달러의 무위험 기간물 금리
 - 바. TIBOR 1개월물, TIBOR 3개월물, TIBOR 6개월물, TIBOR 12개월물은 일본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일본 금융기관간의 JPY 거래금리 (Japanese Yen TIBOR)
 - 사. Compounded RFR는 LIBOR를 대체하기 위해 ISDA에서 정한 사후복리 방법론에 따라 Bloomberg에서 산출 고시하는 통화별 무위험 기간물 금리
 - 아. EURIBOR 1개월물, EURIBOR 3개월물, EURIBOR 6개월물, EURIBOR 12개월물은 EVM(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가 고시하는 유럽은행간 EUR 거래금리
- 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아래의 적용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상기 ①항 2호의 가목부터바목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직전 영업일에 고시한 최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2. 상기 ①항 2호의 사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5영업일 전 일자가 이를 복리 시작일인 지표금리
 3. 상기 ①항 2호의 아의 금리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 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2영업일 전에 고시한 최근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 ③ 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가감하여 정한 내부이자가격(FTP)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제1조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수신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이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상기 Compounded RFR를 사용하는 연동대출의 중도상환이율은 중도상환일자의 이전 변동주기 상당일(이전 상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 5영업일 전 일자가 이를 복리 시작일인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사후복리 예시>
 2022.01.10 : 3개월 Compounded RFR 사용해서 여신 약정 시, 2022.04.10 적용이율은 2022.01.10 의 5영업일 전 일자인 2022.01.03부터 2022.04.03 기간동안 사후복리된 이율을 적용

제3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2.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
 3.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4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 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한도약정수수료

- ① 한도거래 여신을 약정할 때 제 1조에서 정한 한도약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② 제 1 조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 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일수에 대하여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8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①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 1 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의「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text{매일의 적수} = \text{마감잔액} + (\text{일중 최고잔액} - \text{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2. 제 1 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 여신에 대한「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 3.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약정해지일 및 기한연장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 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3.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일, 한도 기한연장일 및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 6 조에 의한 감액·정지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익없기로 합니다.
- ⑦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1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중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 별	증서 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제14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20.	20.	20.	20.
부 채 비 율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 비 율	%	%	%	%	%
() 비 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 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6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의 유용 시 본 대출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제17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